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한정적으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이의신청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7~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등록됨에 따라, 면허세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과세 특례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함(부칙 제2항)

예시) 1. 현 행

- 1,800cc 7인승 자동차 소유시 종전의 승합차로 분류될 경우
  : 제4종(세액 18,000원)

2. 개 정

- 2000. 1. 1 ~ 2004. 12. 31 : 종전(18,000원)
- 2005. 1. 1 ~ 2005. 12. 31 : 23,940원 부과
- 2006. 1. 1 ~ 2006. 12. 31 : 29,880원 부과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한정적으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제9조는 제1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에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종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과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던 것을 1999년 12월 31일자로 심의·의결사항에서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에 대한 것을 삭제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항」으로 개정하였고(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58조 제2항), 위원회 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의 제목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 제9조 제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란 넓게 말하면 지방세에 관한 불복신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처분에 권리구제의 한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제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지방세법 제73조)과 심사청구(지방세법 제74조)라는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하는 불복신청이며, 심사청구는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하는 불복신청이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로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안 제9조 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것으로 축소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분과위원회)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아닌 독립된 위원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위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2)의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음에도 위원회 설치가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는 시가표준액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6 제1항

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표준은 조세객체, 즉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9조 제3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조례 제9조 제3항은 개정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정수가 하향 조정되었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아닌 독립된 위원회이고, 심의대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대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안 제9조 제3항처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9조 제6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규칙위임사항에 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례안 부칙 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종전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제4종의 면허세가 부과되었으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등록해야 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은 종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부과하였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승용차로 분류되어 상향 부과됨으로써 야기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과세특례조항을 부칙에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1999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